

의안번호	제 348 호
의 결 연 월 일	2020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0년 1월 6일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1. 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교육장 위임 사무 중 관할구역 내 사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

-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이하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과 관련한 사항 포함(안제5조제15호)
 -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
 -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관한 보고·조사 등에 관한 사항
- 사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신설(안제5조제3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: 심사대상이 아님

4) 입법예고(2019. 11. 8. ~ 2019. 11. 28.): 특기할 사항 없음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5호 사목 및 아목 중 “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”를 각각 “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”를 “고등학교·특수학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교감”을 각각 “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”으로, 같은 호 나목 중 “공무외국외여행”을 “공무국외여행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교육공무원”을 “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육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사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15. <u>관할학교</u>와 관할구역 내 <u>고등학교</u> 이하 <u>학교</u>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(사립학교 경영자 포함)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과 다음의 사항</p> <p>가. 삭제</p> <p>나. ~ 바. (생략)</p> <p>사. <u>사립 중학교</u> 이하 <u>각급학교</u>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</p> <p>아. <u>사립 중학교</u> 이하 <u>각급학교</u> 교육에 관한 보고·조사 등에 관한 사항</p> <p>자. (생략)</p> <p>16. ~ 36. (생략)</p> <p>37. 관할구역 내 <u>공립 고등학교</u> · <u>특수학교</u>의 다음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<u>교감</u> 및 교사의 전보, 순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<u>사립 고등학교</u> 이하 <u>각급학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아. <u>사립 고등학교</u> 이하 <u>각급학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~ 36. (현행과 같음)</p> <p>37. ----- <u>고등학교</u> · <u>특수학교</u>----- --</p> <p>가. <u>공립 고등학교</u> · <u>특수학교</u></p>

회, 임지지정, 겸임, 파견,
휴직, 복직, 명예퇴직

나. 교감 및 교사의 직위해제,
의원면직, 경징계(교사에
한함), 포상, 성과상여금,
공무외국외여행

다.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확정
및 정기승급

<신 설>

교감 -----

나. 공립 고등학교 · 특수학교
교감 -----

공무국외여행

다. 공립 고등학교 · 특수학교
교육공무원-----

라. 사립 고등학교 · 특수학교
교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금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1.1.] [법률 제11212호, 2012.1.26 타법개정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17.6.14.] [대통령령 제27667호, 2016.12.13. 제정]

제6조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5.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
6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